



### ◆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 개요

- ✓ 정의 : 편의시설·이동편의시설의 설치, 관리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
- ✓ 인증대상 : 지역인증(지역), 개별시설인증(도로, 공원, 여객시설, 건축물, 교통수단)
- ✓ 의무대상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 별표1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시설  
(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공장, 자동차 관련 시설, 방송통신시설, 교정 시설, 묘지 관련 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장례식장)
- ✓ 인증 평가항목

#### 6개 부문 해당시설 평가 (건축물 기준)



### ✓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

-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, 한국장애인개발원, 한국환경건축연구원, 한국감정원,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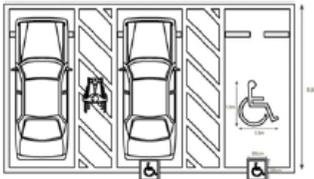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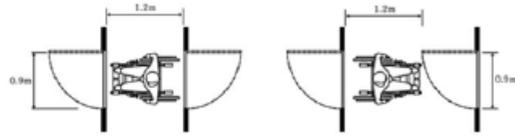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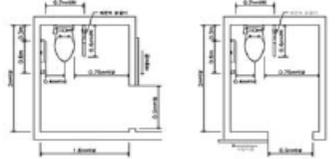


### ◆ 관련 법규 주요 개정사항

- ✓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의3 [2018.01.30 개정]

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
3호 가목 (4)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(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)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주출입구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<b>자동문 형태</b> 로 하여야 한다.

- ✓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1 [2018.02.09 개정, 2018.08.10 시행]

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
4호 다목 (1)	<p>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.</p> 
6호 가목 (1)	<p><b>출입구(문)의 통과유효폭을 0.9m이상으로</b> 계획하여야 한다.</p> 
13호 나목 (1)에 (가), (2)에 (가)	<p>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<b>폭 1.6m이상, 깊이 2.0m이상</b> 계획 <b>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로</b> 하여야 한다.</p> 
13호 나목 (4)에 (라) 신설	<p>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<b>비상용 벨</b>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.6m~0.9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



### ◆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

- ✓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 별표1
- ✓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시설

의무대상 시설			
제1종 근린생활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, 미용원, 목욕장 등</li> <li>• 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지구대, 우체국, 보건소, 공공도서관 등</li> <li>• 대피소, 공중화장실, 지역아동센터, 의원, 치과의원 등</li> </ul>	업무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</li> <li>• 금융업소, 사무소, 소개업소, 출판사, 오피스텔 및 유사시설 등</li> <li>•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, 한국장애인고용,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</li> </ul>
제2종 근린생활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등</li> </ul>	숙박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숙박시설(호텔,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)</li> <li>• 관광 숙박시설 등</li> </ul>
문화 및 집회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연장 및 관람장, 집회장, 전시장, 동·식물원</li> </ul>	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물품의 제조·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</li> <li>•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</li> </ul>
종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교집회장</li> </ul>	자동차 관련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차장, 운전학원(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)</li> </ul>
판매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매시장, 소매시장, 상점</li> </ul>	방송통신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방송국, 전신전화국 등</li> </ul>
의료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병원, 격리병원</li> </ul>	교정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호감호소, 교도소, 구치소, 소년원, 소년분류심사원 등</li> </ul>
교육연구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교, 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도서관</li> </ul>	묘지 관련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화장시설, 봉안당</li> </ul>
노유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동 관련 시설, 노인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(장애인복지시설)</li> </ul>	관광 휴게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야외음악당, 야외극장, 어린이회관 등</li> </ul>
수련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생활권 수련시설, 자연권 수련시설</li> </ul>	장례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</li> </ul>
운동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체육관,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</li> </ul>		

- ✓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제정 (2015.08.03)
  - 예비인증 시 수수료 286만원 중 현장실사 미적용 시 교통비 80만원 제외가능(206만원으로 책정)
  - 인증 연장 수수료는 인증 수수료의 50/100
- ✓ 인증시설 제외
  - 지형, 문화재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



### ◆ 인증등급별 점수 기준

- ✓ 해당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함
- ✓ 시설 중 해당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

예) 2. 내부시설에서 경사도가 없을 경우 평가하지 않음

등급	평가점수
최우수등급(★★★)	만점의 90% 이상
우수등급(★★)	만점의 80% 이상 90% 미만
일반등급(★)	만점의 70% 이상 80% 미만

